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오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34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4.

발 의 자:조오섭·송갑석·윤영덕

이병훈・양향자・이용빈

문진석 · 민형배 · 강은미

이형석 · 주철현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해당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하되, 구체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여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「장애인복지법」의 같은 규정은 장애인거주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장애인의 료재활시설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부령은 보호구역 지정시설로 장애인생활시설만을 정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.

이에 위임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

장애인복지시설 중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면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(안 제12조의2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"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시설"을 "장애인복지시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 	개 정 안
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	제12조의2(노인 및 장애인 보호
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	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
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	
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	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	
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	
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	
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	
인 보호구역으로, 제4호에 따른	
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	
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	
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	
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	
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	
있다.	
1. ~ 3의2. (생 략)	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	4
따른 <u>장애인복지시설 중 행</u>	<u>장애인복지시설</u>
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